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569
----------	---------

제안년월일 : 2024년 3월 5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현행 조례와 중복되는 청년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도시형소공인 양성을 위한 내용에 청년교육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안 제5조제2항제6호를 삭제함.
- 학교, 대학 등 기간과 도시소공인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제5조제2항제7호에서 제6호로 수정함.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① (생략)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① (현행과 같음)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설> <신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6. 도시형소공업에 대한 청년교육사업 7. 학교, 대학 등의 기관과 도시형소공인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5. (개정안과 같음) <삭제> 6.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학교, 대학 등의 기관과 도시형소공인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도시형소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제공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① (생 략)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5. (생 략) <u><신 설></u> 제17조 <신 설>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5. (현행과 같음) 6. <u>학교, 대학 등의 기관과 도시형소공인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u> <u>제17조(도시형소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u> <u>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제공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형 소공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u> <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u>